

『음식물쓰레기사료화시설운영 • 관리의민간위탁에관한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향상시키고,
-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일반현황
 - 위 치 :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 412번지(환경사업소내)
 - 용 량 : 50톤/일(습식사료화시설)
 - 투자시설비 : 1,100,000천원(국비:330,000, 시비:770,000)
 - 주요시설
 - 파쇄기 : 3대(30kW×2대, 50kW×1대)
 - 자석식선펠기 : 1대(6.7kW)
 - 분쇄기 : 1대(37kW)
 - 분리스크린 : 2대(동력:2.2kW, 처리량:25m³/시)
 - 오존살균기 : 1대(오존발생량:max48g/day)
 - 탈수기 : 2대(7.5kW×1대, 5.5kW×1대)
 - 계근대 : 1식(3.0m×9.0m×1.2.30Ton)
 - 전기시설 : 2식(전기판넬)
 - 가동기간 : 1999. 9. 23부터 ~ 현재까지
 - 운영인원 : 5명(기능직:1, 환경미화원:3, 공공근로:1)

○ 위탁시기 및 범위

○ 시 기 : 2005년 상반기

○ 범 위

-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관리, 운영 전반

-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개선 및 증설(수탁자 부담)

-음식물쓰레기의 수집, 운반(시 대행업체에서 운반하지 않은 발생 지역 등)

○ 처리비 지급 및 산정

○ 처리비 지급 : 음식물쓰레기 처리량 및 운반량에 따라 지급

○ 처리비 산정 : 시와 수탁업체와 협의 및 원가계산 전문기관의
용역에 의한 가격.

○ 수탁기관

○ 제한 경쟁입찰에 의한 민간 수탁업체

4. 참고사항

○ 근거법령

○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2항

○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

○ 구미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, 제3항

○ 구미시음식물쓰레기수집,운반및재활용을위한조례 제12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동의안은 음식물 사료화 시설을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민간업체에
위탁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향상시키고,

○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
시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.

○ 자원 시설의 관리·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
이라 판단됨.